

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4의2] <개정 2018. 1. 18.>

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 (제59조관련)

신고번호 제 호

건설기계대여업주기장

1. 상호 또는 명칭 :
2. 대표자성명 :
3. 면 적 :
4. 전화번호 :

비 고

1. 규격 : 가로 100cm, 세로 70cm
2. 노랑색바탕에 흑색글씨
3. 기둥은 철재를 사용하고 기초는 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물의 벽 또는 철조망 등 주변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다면 기둥 및 기초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변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.